|  |
| --- |
| **｢펜지꼬스｣ 회칙** |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 칭**

**제 1항**본 동아리의 정식 명칭은 ｢펜지꼬스｣라 한다.  영문으로는 ｢P.Z.G.S｣라 칭한다.

**제 2조 소속분과**

**제 1항**본 동아리는 숭실대학교 내 동아리 연합회 소속 창작전시분과에 속한다.

**제 3조 목 적**

**제 1항**본 동아리는 대학가의 건설적이고 진취적인 바른 만화소비 및 창작 문화의 다양화 정립에 일조하는 것을 제 1차 목적으로 둔다.

**제 2항**본 동아리는 같은 취미를 가지고 모인 회원 전원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제 2차 목적으로 둔다.

**제 4조 구 성**

**제 1항** 본 동아리는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 그 외 각 영역의 집행부원을 기본으로 둔다.

**제 5조 회 원**

**제 1항**본 동아리의 회원은 3조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는 숭실대학교 학생으로 한다.

**제 6조 교 류**

**제 1항** 본 동아리는 외부의 단체와 교류를 가질 수 있다.

**제 2장  회  칙**

**제 7조 회칙의 목적**

**제 1항**본 동아리의 회칙은 동아리 회원들의 활동이 규정에 맞게 원만히 이루어지고, 회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제 2항** 모든 회원은 회칙을 정독하고 숙지해야 하며 가입이 승인될 시 회칙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8조 회칙의 시행**

**제 1항**본 동아리의 회칙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개정됨과 동시에 시행한다.

**제 9조 회칙의 개정**

**제 1항** 본 동아리의 회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기총회에서 개정한다. 개정은 참석인원의 2/3 이상이 찬성하면 승인된다.

**제 2항** 회칙의 개정이 매우 시급하다고 임원진들을 통해 판단될 경우 재학생과 졸업생에 한하여 정집에서 회칙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항** 회칙 개정이 요구된 경우휴학생을 제외한 정집 참석인원의 2/3가 찬성하면 개정이 승인된다. 회칙 개정이 승인되면 운영진은 가장 가까운 정집을 임시총회로 변경하여 개최한다.

**제 4항** 특정 회원이 회칙 개정을 요구하였을 경우, 이 회원은 회칙 개정의 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요구한 날짜로부터 4개월 동안 회칙 개정을 요구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제 3장  회  원**

**제 10조 가입 및 탈퇴**

**제 1항**본 동아리의 가입은 동아리 가입 신청한 인원에 대하여 허용하며 인명부에 기입과 동시에 회원의 자격이 부여된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동아리의 신입회원은 그 해의 전년도 학번까지 받는다. 단, 이수 5학기 이하를 증명할 경우 예외적으로 가입을 허용한다.

**제 2항**본 동아리의 탈퇴는 탈퇴의사를 분명히 밝힌 회원에 한하여 의사를 수렴함과 인명부에서 인적사항을 파기하고 등급과 지위에 상관없이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 3항**본 동아리의 운영진은 동아리의 단합과 목적에 위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인원에 한하여 가입·승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일한 사유에 의해 특정 신입회원을 임의 탈퇴시킬 수 있다.

**제 4항**재학생의 퇴출은 우선 총회 전 정집 때 재학생이 동아리 단합이나 목적에 위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학생에 대해 건의를 한다. 그 후 임원진 내 투표를 통해 2/3 찬성 시 정집 안건 선정 후 정집 때 재학생 투표를 통해 2/3 이상 찬성 시 퇴출 결정을 한다.

**제 5항**탈퇴한 인원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재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임의 탈퇴조치를 받았던 인원의 경우에는 운영진 및 해당 회원과 같은 기수의 동의를 얻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 11조 회원등급**

**제 1항** 본 동아리의 회원은 신입회원, 재학생, 졸업생, 휴학생으로 구분된다.

**제 2항** 모든 회원은 숭실대학교 정식 사이트의 입학란에 포함된 모든 부속학교 및 학교 중 동아리 가입원서를 작성한 자로 한다.

**제 3항** 졸업생은 당해 졸업예정자를 포함한 졸업한 자로 한다.

**제 4항** 휴학생은 회원 중에서 군 휴학 또는 일반휴학을 사유로 운영진에게 휴학생 신청을 한 자로 한다.

**제 5항** 4학년 이상 재학생(7학기이상 이수한 자)은 졸업생과 같은 회원등급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제 12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제 1항**졸업생과 휴학생, 회비를 6학기 이상 납부한 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매 학기마다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2항** 재학생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재학생은 운영진에 선출될 수 있고 정집에서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아리의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나. 재학생은 반드시 총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한 불참 시에는 최소한 총회 개최 일주일 전에 운영진에게 서신으로 혹은 동아리방이나 웹상의 게시판(#펜지꼬스 공식 밴드 및 다음카페에 올라온 정집 일정에 정집 불참사유를 작성해야한다)에 서면으로 정식 통보해야 한다.

다. 재학생이 정기집회와 총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해당 모임에서 다루는 안건에 대한 결정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3항** 신입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재학생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되 임원진으로 선출될 수 없다.

나. 신입회원은 재학생보다 5000원 할인된 회비를 납부한다.

**제 4항**졸업생

가. 졸업생은 재학생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단, 운영진에 선출될 자격은 갖지 않는다.

나. 졸업생은 정집, 총회 참여는 필수가 아니다.

**제 5항**휴학생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휴학생은 재학생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단, 운영진에 선출될 자격은 갖지 않는다.

나. 휴학생은 휴학기간이 끝났을 경우 이 사실을 운영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휴학생은 정집, 총회 참여는 필수가 아니다.

**제 13조 회원관리**

**제 1항**본 동아리의 졸업생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매년 말에 회원관리의 대상이 된다. 운영진은 회원관리 내용을 정집에서 발표한 후 그 명단을 웹상의 게시판에 게시해야 한다.

**제 2항**승급

가. 신입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입한 다음 학기 재학생으로 승격된다.

나. 신입회원은 회비 납부 전까진 정식 동아리원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제 3항**강등

가. 회비를 기간 내에 미납한 회원은 운영진 하에 임의 탈퇴시킬 수 있다. 단, 성실함이 인정되는 회원의 경우 미납 사실을 통보하고 1달의 유예 기간을 준다.

**제 4항** 졸업생 및 휴학생

가. 졸업생 및 휴학생으로 분류된 회원은 회원관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 휴학생이 휴학기간 종료 사실을 운영진에게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3년 안에 회원관리의 대상 인명부에서 제외가 된다.

**제 4장  운 영 진**

**제 14조 운영진의 목적**

**제 1항**본 동아리의 운영진은 대외적으로 동아리를 대표하는 신분으로서 동아리의 위상을 높이고 동아리 연합회를 비롯하여 여타 동아리들과 협력하여 상호발전을 도모하며, 대내적으로 각종 동아리 업무를 분담 처리하여 효율적으로 동아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 2항**본 동아리의 운영진은 동아리 전반의 운영을 맡는다. 운영진이 관여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가. 동아리방과 동아리의 일상적인 문제 해결

나. 동아리가 주관, 참여하는 작업이나 행사의 집행

**제 15조 운영진의 단계 및 구성**

**제 1항**운영진의 단계는 회장, 부회장, 집행부원으로 나눈다.

**제 2항**본 동아리는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 그 외 각 영역의 집행부원을 기본으로 둔다.

**제 3항**그림부장은 부서의 특수성을 고려해 임원진으로 지정한다.

**제 16조 운영진의 선출 및 임기**

**제 1항**운영진 후보 자격은 재학생 중에서 다음 학기에 등록 및 활동이 가능한 모든 회원으로 한다.

**제 2항**운영진 후보는 자의 또는 총회에 참석한 재학생들의 추천에 의해 선정된다.

**제 3항**운영진 선출방식은 비밀투표로 하며 표결에서 탈락한 후보는 의사가 있거나 타 회원에 의해 추천이 이루어 졌을 경우 재차 운영진 후보로 나설 수 있다.

**제 4항**운영진은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의 거수로 결정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원진에 공석이 발생할 경우 미리 공지하고, 가까운 정집에서 운영진을 선출한다.

**제 5항**운영진 임기는 선출된 날짜로부터 2학기 종강총회가 끝나는 시점까지로 한다.

**제 6항**운영진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총회를 열어 재선출한다.

**제 7항**본 동아리의 모든 운영진은 연임이 가능하다.

**제 17조 운영진의 권한 및 의무**

**제 1항**본 동아리의 회장은 동아리를 대표하는 직위로서 동아리의 대내외적 행사의 총책임자가 되며 모든 동아리 회의의 의장 역할을 한다.

**제 2항**회장은 정기모임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으며 운영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또한 회장은 회원들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의 경우 적당한 일시에 임시 정기모임을 개최할 수 있다.

**제 3항**회장은 동아리의 각종 운영서류와 접수되는 공문을 관리하고 해당 업무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대외적으로 발송되는 공문의 작성과 발송을 담당한다.

**제 4항**회장은 동아리 연합회 및 총학생회에서 주최하는 동아리 관련 회의에 출석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참가가 불가능할 경우 대리 참가자를 지목하여 출석시키고 후에 회의내용을 전달받는다. 회의내용은 가장 가까운 정집에서 회원들에게 공포한다.

**제 5항**회장은 동아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운영진 회의 하에 예산지출을 결정할 수 있으며 지출된 금액과 내역을 가장 가까운 정집에서 회원들에게 공포한다.

**제 6항**본 동아리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 시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각종 동아리의 대내외적 행사에서 소모임장들과 함께 주도적인 위치에 선다.

**제 7항**부회장은 정집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으며 운영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또한 부회장은 회원들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의 경우 회장에게 특정 일시에 임시 정집을 개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8항**부회장은 동아리의 각종 운영서류 및 접수되는 공문을 관리하고 해당 업무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대외적으로 발송되는 공문의 작성과 발송을 보조한다.

**제 9항**부회장은 동아리 연합회 및 총학생회에서 주최하는 동아리 관련회의에 출석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참가가 불가능할 경우 회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항** 부회장은 동아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예산지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승인될 경우 지출을 시행하고 이 내역을 가장 가까운 정집에서 회원들에게 공포한다.

**제 11항**부회장은소모임 보고서 및 소모임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원진들에게 전달한다.

**제 12항** 본 동아리의 집행부장은 각종 동아리 업무의 실질적인 세부사항을 맡아서 처리한다.

**제 13항** 본 동아리의 집행부장은 ‘기획홍보’, ‘동아리방 관리’ 2개의 세부영역에서 기본 1개 영역을 담당한다.

**제 14항** 본 동아리의 집행부장은 동아리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재학생 이하 회원을 동원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제 15항** 회장 및 부회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진 회의를 거쳐 새로운 직급의 집행부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기존 직급의 집행부장을 해임할 수 있다.

**제 16항**그림부장

가. 동아리의 각종 만화 행사의 총 책임을 진다.

나. 매주 개회되는 습작모임의 진행자 역할을 한다.

**제 17항**기획부장

1. 동아리의 각종 행사 및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진행한다.
2. 회장 및 부회장과 함께 신입회원 유치 및 관리에 힘쓴다.

다. 동아리의 각종 행사에 대한 대자보 작성을 관리한다.

라. 각종 동아리 내․외의 행사 혹은 결정사항에 대한 대자보 작업을 맡는다.

마. 인명부 관리 및 수정을 회장과 함께 담당한다.

바. 홍보부장은 인명부를 카페에 게시를 해야한다. 단,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재학생’등급 이상을 가진 회원들만 열람 가능하도록 설정해야한다.

**제 18항**관리부장

1. 동아리방의 위생상태를 관리한다.
2. 이를 위해 임의의 회원을 차출할 수 있다.
3. 동아리 및 소모임 비품을 관리한다.
4. 동아리 기증품 및 개인물품을 관리한다.

**제 19항** 회계부장

    가. 동아리의 모든 예산을 맡아서 관리한다.

    나. 예산 지출 현황을 정리 및 보존한다.

    다. 동아리 행사시 지출계획 작성 및 관리를 행한다.

라. 총회 때 예산 현황을 보고한다.

**제 21항**임기가 끝난 운영진은 자신의 후임자와 함께 다음 학기가 시작하는 시점(후임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함께 업무를 처리한다. 이 기간 동안 선임자는 후임자에게 업무에 관한 인수인계와 지도 및 조언을 한다. 단 이 기간 동안선임자에게 운영진으로서의 권한 및 의무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 18조 운영진의 조기 인수인계 및 사임**

**제 1항** 운영진의 활동이 동아리 운영의도에 부적합하다고 임원진 포함 재학생들은 운영진에 대한 조기 인수인계가 이루어진다.

**제 2항** 운영진 조기 인수인계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운영진이 자신의 직책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나. 운영진의 운영방침이 동아리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경우

다. 운영진의 활동이 매우 부진하여 동아리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라. 동아리 평판을 깎아내던가 동아리 운영에 위해가 되는 행동이나 활동을 하는 경우

**제 3항** 본 동아리의 모든 재학생은 운영진의 해임을 정집에서 건의할 수 있으며, 회장은 정집 참석 인원의2/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차기 정집을 임시총회로 변경하여 개최한다. 이 경우 임시총회에 재학생의1/2 이상이 참석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에는 정집으로 변환하고 임시총회는 그 다음 정집으로 연기된다.

**제 4항** 운영진에 대한 해임여부는 비밀투표로 결정되며 의안이 가결되면 해당 운영진은 그 즉시 사퇴하고 동시에 후임자를 선출한다.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까지로 한다.

**제 5장  모  임**

**제 19조 모임의 목적**

**제 1항**본 동아리의 모임은 동아리 운영을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회원들간의 정보 교환, 상호 협조 및 문제 제기를 함은 물론 회원들 사이의 협동심과 단결심을 배양하기 위해 개최한다.

**제 2항**본 동아리의 모임은 동아리의 모든 행사 및 활동방향에 있어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의사결정의 기구가 된다.

**제 20조 모임의 종류**

**제 1항**본 동아리의 모임은 정집, 임시정집, 정기총회, 임시총회, 운영진회의가 있다.

**제 21조 모임의 개최**

**제 1항**정집은 동아리의 전반적인 운영을 위해 열리는 모임으로서 2주에 1회 오후 6시에 개최한다. 단 개최 일시는 동아리 운영실정에 맞추어 운영진 회의 하에 변경될 수 있다.

**제 2항**정집은 특별한 사유(시험, MT 혹은 기타 동아리 행사)가 없는 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항**방학 중의 정집은 종강총회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항**임시정집은 정기모임과 동일한 의도 하에 열리는 모임으로서 각종 동아리 업무에 있어서 동아리 인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당한 일시에 회장 및 부회장에 의하여 개최된다.

**제 5항** 각 부장들은 임시정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회장 및 부회장에게 모임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개최여부는 운영진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6항** 총회는 연간 동아리 운영을 결산하고 평가하며 차기 운영진 선출 등의 주요 사안을 처리하는 모임

       으로서 1년에 최소 4번 1학기, 2학기 초와 말에 개최한다.

**제 7항** 임시총회는 학기 중에 동아리 운영상의 주요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열리는 모임으로서, 개최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가장 가까운 정기모임을 임시총회로 변경하여 개최한다.

**제 8항** 운영진회의는 운영진들이 의견을 모아 동아리 주요 활동방향을 결정하는 모임으로서 언제든 운영진 중 1명 이상이 요구할 경우 개최한다.

**제 22조 모임의 기능**

**제 1항**정집

가. 정집은 동아리의 전반적인 활동방향을 계획하고 결정하며 공지사항의 전달과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을 지닌다.

나. 정집은 회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친목을 도모하고 단결심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

다. 정집은 임원진이 안건을 상정하고 회원들과 토의한 뒤 표결로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제 2항**임시정집

   가. 임시정집은 정집과 동일한 성격 및 기능을 지닌다.

**제 3항**정기총회

가. 정기총회는 연간 동아리 운영을 결산하고 평가하며 차기 운영진을 선출하는 기능을 지닌다. 이 밖에도 회칙의 개정과 각종 주요사안의 처리 등이 이루어진다.

나. 정기총회의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개회선언 → 해당년도 활동실적 보고 → 차기년도 활동계획 보고 → 예산 사용내역 보고 → 질의문답 → 회칙 개정 및 시행 → 건의 및 발전사항 → 선임 운영진 인사 → 차기 운영진 선출 → 차기 운영진 인사 → 폐회선언

  다. 정기총회의 주요 의사결정은 투표로 하되, 임원진의 선출은 비밀투표로 결정한다.

**제 4항**임시총회

가. 임시총회는 정기총회의 기능 중 동아리 주요사안 처리와 운영진의 해임 및 선출의 기능을 갖는다.

나. 본 동아리의 모든 재학생과 졸업생은 운영진 탄핵이나 회칙 개정 등과 같은 주요사안이 발생하여 임시총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집에서 이를 건의할 수 있으며, 휴학생을 제외한 참석인원의 2/3가 찬성할 경우 운영진은 차기 정집을 임시총회로 변경하여 개최한다. 이 경우 임시총회에 재학생의 반수 이상이 참석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시에는 정집으로 변환하고 임시총회는 그 다음 정집으로 연기된다.

다. 임시총회의 진행은 회장 및 부회장이 맡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단 탄핵의 대상이 되는 운영진은 진행을 맡을 수 없다.

라. 임시총회의 주요 의사결정은 투표로 하되, 임원진의 선출은 비밀투표로 결정한다.

**제 5항**운영진회의

가. 동아리 활동 중 운영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추진하여야 할 업무의 경우 운영진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나. 운영진회의는 운영진 1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 및 부회장에 의해 가능한 가장 빠른 일시에 개최되며, 3명 이상의 운영진이 출석하였을 경우 회의가 성립된다.

다. 운영진회의는 특별한 형식 없이 토의로 진행되며 결과는 최선임 운영진이 기록하였다가 가장 가까운 정집에서 회원들에게 공포한다.

**제 6장  행  사**

**제 23조 행사의 의미**

**제 1항** 본 동아리의 행사는 크게 대외적 행사와 대내적 행사로 구분한다.

**제 2항** 대외적 행사는 동아리의 위상을 높이고 회원들의 창작욕과 도전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동아리의 이름을 내걸고 각종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 3항** 대내적 행사는 동아리의 내실을 기하고 실력과 더불어 단결력과 소속감을 기르기 위해 기획하는 행사로서MT, 홈커밍데이, 야유회, 소풍 등의 친목행사와 습작모임, 기획회의 등의 행사로 구분된다.

**제 24조 행사의 기획 및 시행**

**제 1항** 본 동아리의 모든 행사에 대한 기획은 기획부장을 주축으로 하며 회장과 부회장 이하 각부 부장들은 이에 적극 협력한다.

**제 2항**기획부장은 행사 기획 내용이나 기획 회의의 결과를 정집에서 발표한다.

**제 3항** 회장 및 부회장은 운영진회의 결과 행사 기획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사를 결의하고 예산지출을 승인하며 가장 가까운 정집에서 행사 시행을 공포한다.

**제 4항** 기획부장과 회계는 행사 기획안과 결과를 기록 및 유지하였다가 행사 종료와 동시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활동보고서와 회계내역을 정집에서 공포한다.

**제 7장  예  산**

**제 25조 예산의 수입**

**제 1항** 본 동아리의 예산은 기본적으로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로서 충당한다. 회비 금액의 변경은 총회에서만 가능하다. 현 재학생 회비는 20000원이다.

**제 2항** 동아리 이름으로 참가하는 대외적 행사(코믹월드 등 만화행사, 축제 등)에서의 수입은 전액 동아리 예산에 포함시킨다(예외사항이 있음).

if 동아리 회비 사용 시 전액동아리 예산에 포함

**제 3항** 회원들의 기부금은 전액 동아리 예산에 포함시킨다.

**제 26조 예산의 지출**

**제1항**본 동아리의 예산은 운영진 회의에서 결의된 모든 동아리 활동에 대하여 자유롭게 지출이 가능하다.

**제2항** 행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지출은 회장과 회계의 승인에 의해 지출 여부를 결정하나, 동아리방 운영에 필요한 비품을 구매하는 경우 운영진에 의해 선구매 후통보 조치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경우 회계는 영수증을 인계받는 것을 조건으로 지출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제3항** 동아리 회비를 회계 보고 시 80만원이 남을 때까지 지출할 수 있다.

가. 엠티 지원금은 인당 6000원을 지원을 한다.

**제 27조 예산의 관리**

**제 1항** 수입 및 지출된 모든 예산의 관리는 회계가 맡는다.

**제 2항** 회계는 수입의 출처를, 지출의 경우 지출사유와 지출을 증명하는 영수증 혹은 이와 유사한 기타 서류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 3항** 회계는 회장 및 부회장이 요구하였을 시 예산 관리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8장 소모임**

**제 28조 소모임의 취지**

**제 1항**소모임은 동아리원들의 친목도모, 취미공유 등의 목표를 이룰 수 있어야한다.

**제 2항** 소모임은 동아리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한다.

**제 29조 소모임의 개설**

**제 1항** 소모임은 언제나 개설할 수 있으나 임원진의 표결 결과 만장일치 찬성을 받아야한다.

**제 2항** 임원진 내부의 결과로 소모임 개설이 불허되었지만,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다음 정집 때 안건을 제시해 해당 소모임을 회원들에게 설명하고 투표하여 운영진을 포함하여 찬성이 2/3 이상일 경우 개설된다.

**제 3항** 만약 찬성이 2/3이 넘지 못했을 경우 해당 소모임은 그 학기 동안 개설이 불가능하다.

**제 30조 소모임의 활동**

**제 1항** 소모임은 매 월 1회 활동보고서를 부회장에게 제출해야한다.

가. 제출날짜는 매 월 25일까지 정한다.

나. 보고서 제출일은 2주전에 임원진이 미리 통보한다.

다. 보고서의 제출은 원칙적으로 소모임장이 제출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소모임원이 제출할 수 있다.

**제 2항** 보고서 제출이 늦었을 경우 패널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1주씩 늦었을 경우엔 1차 경고

나. 3차 경고 때는 소모임이 폐지된다.

다. 경고는 2학기 종강총회되면 초기화된다.

**제3항**소모임이 활동이 없을 경우 다음과 같이 소모임장은 해야 한다.

가. 임원진에게 미리 통보한다.

나. 임원진과의 상의를 통해 패널티를 받지 않게 한다.

**제 31조 소모임의 존폐**

**제 1항** 총회 때 필요가 의심되는 소모임이 제안되었을 경우 제안한 사람과 제안 받은 소모임이 변론한 뒤에 투표하여 찬성이 2/3을 넘겼을 경우 소모임은 폐지된다.

**제 32조 소모임의 지원금**

**제 1항**소모임은 매 학기 개강총회 전까지 소모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항**소모임에게 5만원을 일괄지급하고 +α로 지급한다.

**제 3항** +α 회계의 재량에 따라 지급한다.

**제 4항** 지원금의 구체적(대략적) 액수는 개강총회 때 정한다.

**제 5항** 지원금의 출처는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해야한다.

**9장 동아리방**

**제 33조 동아리방의 취지**

**제 1항**동아리방은 동아리원을 위한 공간이다. 임원진의 허가 없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한다.

**제 2항** 동아리방은 동아리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한다.

**제 34조 동아리방 이용수칙**

**제 1항** 전 동아리원은 동아리방을 청결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 본인이 발생시킨 쓰레기는 본인이 처리해야한다.

**제 2항** 동아리방에서 마지막으로 나가는 사람은 동아리방 문을 반드시 잠궈야한다.

**제 3항** 임원진의 허가 없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한다.

**제 4항 분실물**

가. 펜지꼬스는 동아리방에서 발생한 분실물에 대해 책임이 없다.

나. 동아리방에서 발생한 분실물은 7일 이내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시, 임원진 회의로 처분이 결정된다.

다. 분실물은 동아리원이 동아리방에 놓고 간 물건 및 음식 등 또한 포함한다.

라. 음식물은 부패를 고려해 당일 폐기를 원칙으로 한다.

**제 5항**상기 조항에 대해 적발 시 임원진 회의로 당사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된다.

**최초 시행일 2006. 9. 4**

**최종 수정일 2022. 12. 17**

- 10 -